

서울고등법원

제 10 행정부

결 정

사 건 2014재누169 재심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임그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에이(a)동 103호
피고(재심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 문

원고(재심원고)에게 이 결정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피고(재심피고)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장과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8. 25.

위 정본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이은숙



재판장

판사

김명수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